

### 3.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(신설)	제10조(창업보육기금) 입주기업은 본 대학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'포항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'를 통해 주식(또는 현금 등)을 기부하여야 한다.	학교와 입주기업간 지속적 연계성을 갖고 협력하는 선순환구조 구축